

# 대 학 요 램

---

2020학년도

---



꽃동네대학교



---

# 차 례

---

I. 총 략 .....	1
1. 건학이념 .....	1
2. 교육목적 .....	1
3. 주요연혁 .....	1
4. 교표(University Symbol) .....	4
5. 교가 .....	5
II. 직제 및 교직원 현황 .....	6
1. 조직기구표 .....	6
2. 교원현황 .....	7
3. 위원회 현황 .....	8
III. 학사 .....	15
1. 학 칙 .....	15
2. 학사내규 .....	32
3.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48
IV. 교육과정 .....	61
1. 교양학부 .....	61
2.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	64
3. 사회복지학전공 .....	65
4. 상담심리학전공 .....	72
5. 간호학과 .....	77

<b>V. 대학생활</b> .....	<b>83</b>
1. 장학안내 .....	83
2. 도서관 이용안내 .....	86
3. 학교버스 안내 .....	89
4. 찾아오시는길 .....	90
5. 캠퍼스 안내 .....	91
6. 교내 주요 전화번호 .....	92

# I. 총 람

## 1. 건학이념

꽃동네대학교는 가톨릭이념과 꽃동네정신에 입각하여 학문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개발·교육함으로써 사회복지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여, 우리 사회 및 세계 인류의 복지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2. 교육목적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인 믿음·소망·사랑을 실천하고, 꽃동네의 인간존중 사상을 실현하며, 인류복지 구현에 공헌하는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3. 주요연혁

1997. 5월 음성 꽃동네와 천주교 청주교구의 발의로 꽃동네대학교 창립이 기획됨  
 6월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청주교구 설정 40주년 기념으로 교구장 정진석 주교님의 유훈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토지 마련  
 7월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인가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초대 이사장 정진석 주교 선임  
 교육부에 대학설립인가 신청
1998. 10월 강의동 및 연구동 준공 / 성당, 수도원, 수녀원 기공  
 11월 꽃동네대학교 설립인가 (사회복지학부 입학정원 120명)
1999. 1월 사회복지학부 신입생 120명 선발  
 2월 꽃동네대학교 초대 총장 오웅진 신부 취임, 정진석 장학재단 설립  
 3월 꽃동네대학교 개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복지심리학전공, 복지행정학전공)개설  
 6월 사회복지연구소 설치  
 8월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 제2대 이사장 장봉훈 주교 선임
2000. 3월 제2대 총장 이동호 박사 취임

- 12월 출판부 신설
- 2001. 3월 진학관(기숙사 및 강당) 준공
- 2002. 3월 사회봉사센터 설치
  - 4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설치
  - 10월 사회복지대학원 설립인가
- 2003. 2월 제1회 학위수여식
  - 3월 사회복지대학원 개원 (복지경영관리전공, 임상사회사업전공 개설)
- 2004. 2월 신설대학종합 평가 교육영역 최우수대학 선정
  -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 시설 및 설비분야 최우수대학 선정
  - 3월 제3대 총장 유성중 박사 취임
  - 가상복지관"아미쿠스"개관
  - 4월 산학협력단 설립
- 2005. 9월 디지털도서관 개관
  - 전국 사립대학 중 1인당 연간 장학금 수혜율 6위
- 2006. 2월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 시설 및 설비분야 최우수대학 선정
  - 3월 간호학과 신설(신입생 40명 선발)
- 2007. 3월 간호학과 실습실 개관
- 2008. 2월 제4대 총장 유광호 박사 취임
  - 3월 전자학습센터 개관 / 요양보호사교육원 개원
  - 9월 사립대학교 경영분석 결과 재무부문 최우수등급(A) 획득
  - 10월 전국 4년제 대학(국공립 포함) 중 1인당 장학금 지급액 5위 / 4년제 사립 대학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전국 10위
- 2009. 3월 요양보호사교육원 보건복지가족부 우수교육기관 선정
  - 4월 제 5대 총장 이원우 박사 취임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
  - 6월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사업단 선정
  - 8월 전국 4년제 대학(국,공립포함) 중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 5위

2010. 1월 2년 연속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 사업단 선정  
 2월 요셉의 집(남자기숙사) 준공  
 3월 2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선정  
 4월 대만 정의대학(靜宜大學)과 MOU 및 교환학생협정 체결  
 6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특성화모집단위 선정 대학 선정  
 7월 국립필리핀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8월 전국 4년제 대학 중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 4위  
 11월 일본 니이카타세이로대학(新潟青陵大學)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1. 1월 3년 연속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 노인정신건강사업단 선정  
 3월 2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특성화모집단위 선정 대학 선정  
 5월 3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7월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에서 '꽃동네대학교'로 교명 변경  
 8월 필리핀 세부과학기술대학교(Cebu Technological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9월 필리핀 비사야스 대학(University of the Visayas)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2월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4월 4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5월 3년 연속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 특성화모집단위 지원대학 선정  
 8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 협약체결
2013. 6월 4년 연속 대학 입학사정관 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획득  
 7월 5년 연속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2014. 6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10월 2011년 대학기관평가 인증대학 “사회봉사”영역 우수사례 선정
2015. 6월 대학특성화사업 1차년도 평가 ‘A등급’  
 8월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 494만원(전국 4위, 충북 1위)
2016. 5월 대학특성화사업 ‘계속지원 대상’ 선정  
 12월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7. 1월 대학기관인증평가 ‘사회봉사’ 영역 우수사례 선정  
3월 제7대 총장 황선대 박사 취임  
4월 사회복지학부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로 구조개편  
8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 수탁 운영  
12월 간호교육 인증평가 인증 획득
2018. 8월 미국 Boys Town과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10월 개교 2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개최
2019. 3월 대학혁신지원사업 계약 체결, 태양광발전소 개소식  
6월 미국 Columbia College와 MOU 체결  
9월 법무부 치료감호소와 업무협약 체결

#### 4. 교표(University Symbol)



##### ■ 교표의 의미

교표를 이루고 있는 흰색 바탕은 성부 하느님을 중앙의 큰 별은 성자, 빛은 성령을 의미하며 4개의 작은 별은 복지, 행복, 교육, 사랑을 나타낸다.

별의 붉은 색은 순교와 열정을 뜻한다.

5. 교가

교 가

오용진 작사 이영조 작곡

노 고 산 정 기 어 린 아 름 다 운 곳  
 금 강 물 굽 이 처 서 바 다 로 가 듯

믿 음 소 냇 망 사 랑 으 로 주 촛 들 놓 고  
 높 고 소 냇 은 푸 른 뜻 을 가 슴 에 안 고

박 애 와 인 간 존 엄 기 등 을 - 세 - 위  
 슬 기 와 터 성 - 을 배 우 고 - 익 - 혁

불 먼 의 복 지 정 신 키 워 나 간 다  
 큰 사 랑 깨 우 치 고 실 천 해 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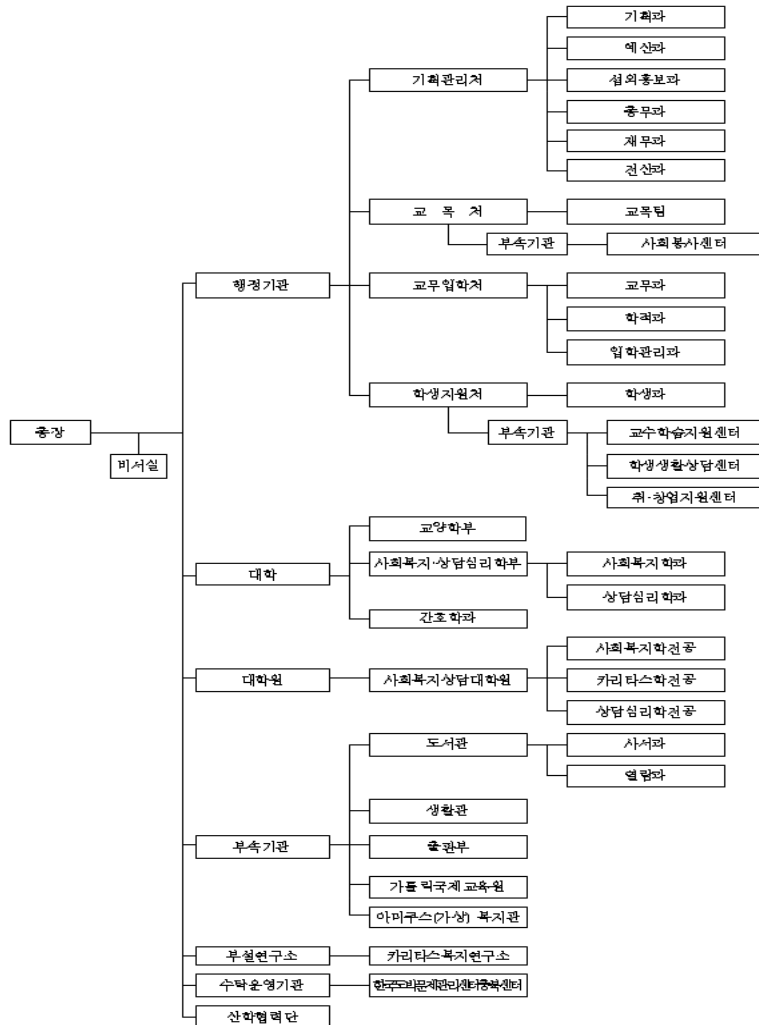
아! 우 리 의 배 움 전 당 꽃 동 네 대 학

겨 레 의 꿈 되 자 소 - 망 이 되 자

## II. 직제 및 교직원 현황

### 1. 조직기구표

기구표



2. 교원현황

성 명	직 위	학 위 (수여학교 및 연도)	전 공
황 선 대	총 장	경영학박사(Georgia 주립대, 1990)	경영학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성 명	직 위	학 위 (수여학교 및 연도)	전 공
양 은 미	교 수	문학박사(충남대, 2000)	영어교육
김 승 주	부 교 수	사회복지학박사(서강대, 2017)	가톨릭사회복지학
전 영 순	조 교 수	교육학석사(이화여대, 1989)	교육학
도 건 창	조 교 수	카리타스학석사(독일 Freiburg Univ., 1999)	카리타스학
김 성 우	조 교 수	카리타스학석사(독일 Freiburg Univ., 2013)	카리타스학
모 수 경	강의전담 조 교 수	문학박사(경희대, 2018)	영어교육
정 중 휴	석좌교수	법학박사(일본 京都大學, 1984)	민법학

사회복지학전공

성 명	직 위	학 위 (수여학교 및 연도)	전 공
김 혜 래	교 수	사회복지학박사(서울대, 2003)	학교사회복지
조 추 용	교 수	사회학박사(일본 佛教大學, 1996)	노인복지
윤 도 현	교 수	사회학박사(Freie Univ., Berlin, 1993)	사회정책
이 태 수	교 수	경제학박사(연세대, 1992)	노인복지
서 동 희	부 교 수	사회정책학박사(The Univ., of Birmingham, 2002)	복지정책
김 경 희	부 교 수	문학박사(이화여대, 2008)	임상사회복지
강 석 임	부 교 수	문학박사(가톨릭대, 2013)	사회복지방법론
전 희 정	조 교 수	사회복지학박사(연세대, 2013)	사회보험

상담심리학전공

성 명	직 위	학 위 (수여학교 및 연도)	전 공
박 상 규	교 수	문학박사(계명대, 2000)	임상심리학
정 명 숙	교 수	심리학박사(호주 Monash Univ., 1991)	발달심리학
손 재 환	조 교 수	문학박사(충북대, 2013)	일반심리학
배 성 훈	연구전담 조 교 수	문학박사(충북대, 2019)	임상심리·상담심리

간호학과

성 명	직 위	학 위 (수여학교 및 연도)	전 공
강 성 례	교 수	간호학박사(서울대, 2003)	간호관리학
전 혜 원	부 교 수	간호학박사(한양대, 2003)	성인간호학
이 윤 정	부 교 수	간호학박사(한양대, 2008)	간호학
장 현 정	조 교 수	간호학박사(충남대, 2013)	모성간호
오 은 영	조 교 수	간호학박사(충남대, 2015)	간호학
이 은 영	조 교 수	간호학박사(한양대, 2002)	간호학

### 3. 위원회 현황

#### ◎ 교무위원회

기능 : 학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 전반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당연직 : 총장(위원장), 대학원장, 교목처장, 교무입학처장,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기획관리처장

추천직 : 교무입학처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주관부서 : 교무과

#### ◎ 교원인사위원회

기능 : 교원의 채용 및 인사에 주요사항 심의

학교의 장 보직제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당연직 : 교무입학처장(위원장), 대학원장,

추천직 : 기획관리처장, 도서관장

주관부서 : 교무입학처

####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기능 : 국외 기관과 교류협정 체결, 국외 협정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타(외국정부 장학생 모집 안내, 교외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안내 등)

당연직 : 임명교수(위원장) - 가톨릭국제교육원장, 교무입학처장, 기획관리처장,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사회봉사센터장

주관부서 :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 기획위원회

기능 : 학칙, 규정의 개정

기본시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기구조직의 설패 및 개선

당연직 : (위원장), 교무입학처장, 기획관리처장

추천직 : 대학원장, 도서관장

주관부서 : 기획관리처

◎대학평의회

기능 :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당연직 : 교원추천 3인, 직원추천 2인, 재단추천 5인, 학생대표 1인

주관부서 : 기획관리처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

당연직 : (위원장), 교원추천 1인, 직원추천 1인, 학생대표 3인

주관부서 : 기획관리처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 도서관 업무에 관한 자문

당연직 : 도서관장(위원장)

추천직 : 교원추천 4인

주관부서 : 도서관

◎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 개인정보보호 정책심의

당연직 : 기획관리처장(위원장), 총무과장, 전산과장

주관부서 : 기획관리처

◎사회복지연구소운영위원회

기능 : 연구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규정 제정 및 개폐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당연직 : 사회복지연구소장(위원장)

추천직 : 교무입학차장,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 사회봉사센터소장, 학보사주간  
주관부서 : 사회복지연구소

◎대학원위원회

기능 :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 징계에 관한 사항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교과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공개강좌의 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당연직 : 대학원장(위원장), , 교무입학처장, 기획관리처장, 복지경영전공책임, 임상사회복지전공책임  
추천직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주관부서 : 사회복지대학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기능 :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산학협력단 예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정관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당연직 : 산학협력단장(위원장), , 교무입학처장, 기획관리처장  
추천직 : 사회복지연구소장  
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

기능 : 교원업적평가  
교원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임교원초빙 평가에 관한 사항  
새로운 연구분야 도입 등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을 위한 사항  
당연직 : 교무입학처장(위원장), , 산학협력단장

추천직 : 대학원장, 도서관장,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전공책  
임교수

주관부서 : 교무입학처

◎생활관운영위원회

기능 : 생활관운영의 기본 방침

생활관 운영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납부금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당연직 : 기획관리처장(위원장), 교무입학처장, 총무과장, 사감, 사생대표

주관부서 : 생활관

◎입학전형연구위원회

기능 : 모든 입학전형의 절차 및 내용을 규정, 수정

당연직 : 교무입학처장(위원장), 기획관리처장, 도서관장, 사회복지·상담심리  
학부장, 간호학과장

추천직 : 교원추천 2인, 입학사정관

주관부서 : 입학관리과

◎입학사정위원회

기능 : 전형절차에 따른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자를 결정

당연직 : 총장(위원장), 교무입학처장, 교목처장, 기획관리처장, 사회복지·상  
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대학원장, 도서관장

추천직 : 입학사정관

주관부서 : 입학관리과

◎입학전형자체감사위원회

기능 : 입학 전형시 행해지는 절차나 내용이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를 확인

당연직 : (위원장), 교무입학처장, 기획관리처장,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추천직 : 교무입학처장

주관부서 : 기획관리처

◎직원인사위원회

기능 : 직원 인사, 상벌 등 주요사항 논의

당연직 : 기획관리처장(위원장), 교무입학처장, 대학원장, 입학관리과장, 학생지원과장

주관부서 : 총무과

◎의식위원회

기능 : 학교 의식행사관련 주요사항 논의

당연직 : 기획관리처장(위원장), 교무입학처장, 총무과 시설담당자

추천직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주관부서 : 총무과

◎식당운영위원회

기능 : 식당운영관련 주요사항 논의

당연직 : 기획관리처장(위원장), 교무입학처장, 식당담당자, 사감, 사생대표

추천직 : 총학생회장

주관부서 : 총무과

◎공간배정위원회

기능 : 학교 공간배정관련 주요사항 논의

당연직 : 기획관리처장(위원장), 교무입학처장,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주관부서 : 총무과

◎장애학생학습위원회

기능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당연직 : 교무입학처장(위원장), 기획관리처장,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

호학과장, 전공별책임교수

추천직 : 교무입학차장

주관부서 : 학생과

◎장학위원회

기능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장학금 및 장학생수 배정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사 및 확정

당연직 : 교무입학처장(위원장), 기획관리처장,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

호학과장, 교목처장, 전공별책임교수

추천직 : , 교무입학차장

주관부서 : 학생과

◎학생지도위원회

기능 : 학생상별

학생단체등록 신청 심의

당연직 : 교무입학처장(위원장), 기획관리처장,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

호학과장, 전공별책임교수

추천직 : , 교목처장, 교무입학차장

◎학생생활상담연구소운영위원회

기능 : 상담실의 운영관리 및 현황과약

당연직 : 상담소장(위원장), 교무입학차장, 사회복지연구소장, 사회봉사센터

소장, 학보사 주간

주관부서 :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보사운영위원회

기능 : 학보사 운영 전반 심의

당연직 : 학보사주간(위원장), 교원추천 4인

주관부서 : 학보사

◎요양보호사교육원운영위원회

기능 : 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당연직 : 교육원장(위원장), , 기획관리처장

추천직 : 교원추천 3인

주관부서 :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기능 : 개설과목 협의 및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

당연직 : 교무입학처장(위원장),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추천직 : 전공책임교수, 기획관리처장, 교목처장

주관부서 : 학적과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 사회봉사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매년도 주요사업 심의 및 수정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 계획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기타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당연직 : 사회봉사센터소장(위원장)

추천직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교무입학처장

주관부서 : 사회봉사센터

◎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당연직 : 교무입학처장(위원장), 취업지원센터장(부위원장)

추천직 :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장, 간호학과장, 전공책임

주관부서 : 취업지원센터

## Ⅲ. 학사

### 1. 학칙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우리 대학교는 믿음(信)·소망(望)·사랑(愛)을 실천하는 가톨릭 신앙을 이념으로 설립되었다. 우리 대학교는 이 이념 아래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꽃동네의 인간존중생명사상을 실현하고, 인류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을 교수연구하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999.9.1. 및 2001.9.1. 자구수정)

제2조(학부, 전공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는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및 간호학과를 두며,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의 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 및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학위수여는 별표 2와 같이한다. (1999.9.1. 자구수정 및 학부입학정원 조정 및 2005.11.22. 간호학과신설로 개정)(2015.4.28 학부입학정원 조정)(2017.5.1. 학부구조 개편)(2019.4.24 학부구조 개편 및 입학 정원 조정)

별표 1. 학부(과)별 입학정원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사회복지학과	35명
	상담심리학과	20명
-	간호학과	53명

별표 2. 학부(과)별 수여학위 종별표

학부(과)명	전공명	학 위 명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사회복지학과	문 학 사
	상담심리학과	문 학 사
-	간호학과	간호학사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3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단 학칙 제28조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재학기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1학기 내지 2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4조(재학연한) ① 각 전공분야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편입학자는 본 대학교에서 수업할 연한,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에 수업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학연한 내에 각 전공분야 졸업의 소요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 제 3 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2학기로 한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다만, 제2학기는 2주 범위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2001.9.1. 단서조항 추가)

③ 전항의 학기 외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제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교기념일, 국정공휴일, 일요일로 한다.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6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2주의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2011.8.17 자구수정)

③ 휴업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2001.9.1. 자구수정)

### 제 4 장 입 학

제8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 및 편입학은 학기초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9조(입학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0조(입학지원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2.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 기타 지정하는 서류

②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01.9.1. 자구수정 및 조항추가)

제11조(입학전형) ① 신입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정한다.

1. 출신고등학교의 내신성적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3. 대학별고사 성적
4. 면접고사 성적
5. 기타 필요한 자료

② 대학별 선발고사의 과목 및 입학전형기일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발표한다.

③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하는 대학입시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두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01.9.1. 자구수정)

제12조(입학허가)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허가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2001.9.1. 자구수정)(2019.2.8. 개정)

제13조(등록) ①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재학생 서약서와 보증인 보증서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는 외에 본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01.9.1. 자구수정)

제14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부형이어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재학중 학비,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보증인의 주소와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보증인을 정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편입학) ① 본 대학교의 3학년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제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③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④ 본 대학교에서 제적된 자 또는 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⑤ 편입학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학사편입학)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3학년에 편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편입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9.2.8. 개정)

③ 학사편입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정원 외 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입학정원 외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하며 퇴학 후 5년(군복무기간 포함)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야 하고 퇴학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학 후 5년을 경과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재입학을 결정한다. (2008.3.1. 단서조항수정)

② 학칙 제40조에 의하여 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 당해 모집단위(전공)에서 수  
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총장이 재입학을 결정한다.(2008.3.1.신설)

③ 학칙 제52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2008.3.1.수정)

### 제 5 장 전학 및 전공의 변경

제19조(전학 및 전공의 변경) ① 전학 및 전공의 변경은 학부(전공)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학은 1학년 2학기, 전공의 변경은 2학년 2학기에 허가할 수  
있다. (2005.3.1. 자구수정)

② 전학 및 전공의 변경을 허용하는 학부(전공)의 범위와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6 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0조(휴학) 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2001.9.1. 자구수정)

제21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입대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① 재학중 군입대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  
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21조 제2항에 관계없이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3.4.22 항목추가)

② 입대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3.4.22 항  
목추가)

제23조(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복학  
할 수 있다.

②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초 복학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

③ 복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9.1. 및 2001.9.1. 자구수정)

제24조(자원퇴학)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2001.9.1. 자구수정)

제2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2001.9.1. 자구수정)

1.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1개월 이상 계출 없이 결석한 자
3. 소정 기한 내(휴학기간 만료자 포함)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
6. 학칙 제40조에 해당되는 자
7. 학칙 제52조에 의하여 퇴학처분된 자

## 제 7 장 교과와 이수

제26조(교과과정) ① 각 학부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 각 학부의 교과과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학점) ①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1학기간 15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등과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1주 2시간 이상 1학기간 30시간 이상 수업을 1 학점으로 한다. (2009.3.1. 자구수정)

② 수업은 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7.12.15.조항추가)

제28조(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2005.3.1.자구수정)

제29조(교류학점인정) ① 본 대학교와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한 대학에 수학한 학생의

학점은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소정의 학점을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당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를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이거나, 7학기 이상 수강하는 학생은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05.3.1. 자구수정)(2015.01.23.자구수정)

② 삭제 (2005.3.1.)

③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1회 6학점 이내로 한다. 계절제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1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16.02.03.신설)

제31조(학점취득 특별시험) ①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학년에 재학중인 자라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의 교과목은 학점취득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되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국어영역

2. 영어회화

③ 학점취득 특별시험의 응시대상과 시험기일, 방법 및 기타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외국어, 종교관련과목, 사회봉사과목은 공인점수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5. 3. 1. 신설)

제32조(학년 수료학점)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제1학년 : 35학점 이상 (2005.3.1.자구수정)

제2학년 : 70학점 이상 (2005.3.1.자구수정)

제3학년 : 105학점 이상 (2005.3.1.자구수정)

제4학년 : 140학점 이상 (2005.3.1.자구수정)

제33조(교직과정) 삭제 (2005. 3. 1.)

제34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①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전공분야에서 3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한다.(2005.3. 1.자구수정)(2017.12.15.자구수정)

②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부전공분야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허용전공분야 및 이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수강과 이수)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한 내 수강과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기 중 수강과목의 변경은 소정 기간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강과목은 그 성적을 얻을 수 없고 자동적으로 과락이 된다.

④ 교과목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수험자격) 각 교과목별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 결석하면 당해 교과목에 한하여 수험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응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시험) ①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정기시험으로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되, 중간고사과목은 교과목에 따라 논문, 개인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과목에 따라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③ 재시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과 평소의 성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사정하되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 이하는 낙제로 한다. (1999.9.1. 자구수정 및 항목변경)

② 학점이 없는 과목은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③ 추가시험은 "B"급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④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급	평 점	실 점
A+	4.5	95 - 100
A <sub>o</sub>	4	90 - 94
B+	3.5	85 - 89
B <sub>o</sub>	3	80 - 84
C+	2.5	75 - 79
C <sub>o</sub>	2	70 - 74
D+	1.5	65 - 69
D <sub>o</sub>	1	60 - 64
F	0	0 - 59

제39조(학점인정) ① 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 편입학 학생에게는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한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40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 (1999.9.1. 자구수정)

②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2016.02.03.항개정 및 호신설)

1.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1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 학기 개시 후 8주 이내에 지도교수로부터 1회 이상의 학업상담을 받고 지도교수는 상담일지를 학과(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한다.

3. 다음 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에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2016.02.03.신설)

④ 담당부서는 학사경고가 확정되는 즉시 본인 및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6.02.03.신설)

제41조(졸업논문 등) ① 해당 학부에서 소정과정을 마친 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졸업논문(또는 졸업시험 등)의 심사 판정을 거쳐야 한다. (2001.9.1. 자구수정)

② 졸업논문 제 시행에 필요한 요령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2조(졸업)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로 정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표시한다. (2005. 3. 1. 자구수정)

②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하고 학칙 제3조 해당자도 전기 또는 후기로 졸업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01.9.1. 자구수정)(2015.01.23. 자구수정)

제43조(외국인 특별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수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력을 고사하여 허가하고 교과 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8 장 납입금

제44조(납입금 납입의무)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록금 산정의 심의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0.12.2. 신설)

제45조(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학생자율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001.9.1. 자구수정)

제46조(결석 또는 정학자 납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유급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47조(휴학, 복학자 등 납입금) ① (2001.9.1삭제)

②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는 당해 학기의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예외규정은 학사내규로 정한다. (2001.9.1 조항삭제 및 자구수정)

제48조(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금액은 과오납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와 장학금 수혜자로서 학비감면을 받지 않고 기납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제 9 장 공개강좌 및 시간제등록생(2009.3.1.시간제등록생규정 추가신설)

제49조(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학술 연구상 이론과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들 수 있다.

제50조(공개강좌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50조의 2(시간제등록생의 정의) 시간제등록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매학기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50조의 3(시간제등록생의 선발) ① 시간제등록생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모집단위는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로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정한다. (2019.2.8. 개정)

③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선발한다.

제50조의 4(시간제등록생의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① 시간제등록생의 학년도 및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에 관해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은 해당 학년도 재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50조의 5(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연간 24학점) 이내로 한다.

② 시간제 등록학생이 총140학점(그 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하고 교양과목을 24학점 이상,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이상을 취득하고, 제41조의 졸업논문 심사등을 통과한 경우 제42조에 정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9장의 2 자체평가(2009.12.1.신설)

제50조의 6(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51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학부 교수회의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관 부서(교무입학처)에서 즉시 처리, 지도하도록 한다. (2019.2.8. 직제개편)

1. 성행이 불량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1장 장학금

제53조(장학금) 본 대학교의 장학금은 표창금과 학비보조금으로 구분하며,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중지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1.9.1. 자구수정)

## 제12장 직 제

제54조(직제) 본 대학교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001.9.1. 자구수정)

## 제13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55조(부속 및 부설기관) 부속 및 부설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제13장의 2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2011.7.1. 자구수정)

제55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를 둔다.

(2011.7.1. 자구수정)

-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산하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기타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004.4.20. 본조 신설)

### 제14장 교무위원회

제56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57조(구성)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처장, 학부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되, 총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자 외의 인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2013.4.22 추가삽입)(2019.2.8. 직제개편)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8조(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육전반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제15장 교수회

제59조(교수회) ①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2012.7.1. 자구수정)

③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체교수의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이를 소집한다.

④ 교수회는 재직 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2001.9.1. 항목 추가 및 자구수정)

제60조(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1.9.1. 자구수정 및 항목 변경)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 제16장 학생활동

제61조(대학생활) 학생은 따로 정하는 소정규칙을 준수하며 학업에 정진하고 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62조(학생활동)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총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생은 총학생회 및 그 산하단체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으며, 총학생회가 원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 및 그 산하단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63조(학생지도)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4조(과외활동) ① 학생이 과외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절차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한다.

제65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008.3.1.개정)

제66조(집회 및 행사) 총학생회가 집회 및 행사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학생 간행물 및 홍보물) 학생의 간행물 및 홍보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7장 교 원

제68조(강의시간 배정한도) 전임교수는 주당 4일 이상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시간수는 2과목 이상을 담당할 경우 주 9시간, 1과목을 담당할 경우 주당 12시간

을 배정하되 15시간은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001.9.1. 및 자구수정 단서조항 삭제)

제69조(행정직 교수) 행정직 교수의 주당 책임시간 수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보충) 불가피한 경우 전임교수의 담당시간이 미달될 때에는 그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이는 초과시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71조(수강학생수 초과) 수강학생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함으로써 인한 교수의 과중한 부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72조(강의외 책임) 본교의 전임교수는 강의 이외에도 학생지도와 입학선발 등 중요 학사업무에 참여할 책임을 진다.

### 제18장 학칙개정

제73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교 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주관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공고) ① 개정안을 제출 받은 학칙개정 주관 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016.12.14.공고일수정)

② 총장은 학칙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의견제출) ① 각 부서장은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6조(심의·공포)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이를 공포한다.(2016.12.14.자구수정)

제77조(보고) (2011.12.28.삭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규정)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는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운영한 방송·통신에 의한 시범강좌에 대하여는 이 변경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사내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꽃동네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7.1. 자구수정)

### 제2장 학기등록

제2조(등록)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 제3장 수강신청

제3조(신청요령) ① 학생은 매학기 실시하는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전공책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산망을 이용해서 입력한다.

②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별도 지정된 일자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신입생과 복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한다.

③ 특히 3, 4학년 학생은 수강신청시 배부되는 수강신청편람을 세밀히 검토하여 교양필수,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의 이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은 한번 입력하면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 책임 하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⑤ “C+”학점 이하의 모든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신청서에 재수강 표시를 하여 해당학기의 수강신청과목과 함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21학점까지 수강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8.3.1.수정)

(2015.01.23.자구삭제)

②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인 학생은 3학점까지 초과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7학기 이상 수강하는 학생은 제1항과 관계없이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5.01.23.자구수정)

④ <삭제> (2008.3.1.)

⑤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1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16.02.03.신설)

제5조(우등생제한) 18학점 미달 신청자는 우등생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4장 교과과정

제6조(교양과목) ①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양과목은 대학 교양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목으로 균형있게 편성해야 한다. (2008.3.1.부분삭제, 수정), (2017.5.1. 개정)(2018.6.22 개정)

② 교양필수선택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각 핵심역량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8. 6.22 개정)

제7조(학부별 최저이수학점 및 이수구분)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의 최저 취득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2008.3.1.수정) (2013.4.22.수정) (2017.5.1.수정)(2017.12.15.개정)(2018.12.18.개정)(2019.2.8.개정)

①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 취득학점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2011이전 입학생	2012이후 입학생	
사 회 복 지 학 부	교양	교 양 필 수	16	16	
		교양필수선택	8	8	
		사 회 봉 사	P	P	I-IV
		미 사	P	P	I-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5	15	
	사회복지학전공	전공필수	30	34	
		전공선택	12	12	
	복지심리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6	36	
	복지행정학전공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전공	23	19	
	계	140	140		

②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취득학점

<단일심화전공인 경우>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2018 입학생	2019 이후 입학생	
사 회 복 지 · 상 담 심 리 학 부	교양	교 양 필 수	16	19	
		교양필수선택	8	8	
		사 회 봉 사	P	P	I-IV
		미 사	P	P	I-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5	12	
	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66	66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전공	35	35	
	계			140	140

<복수전공인 경우>

구분	과 정	과 목	학점		비 고
			2018 입학생	2019 이후 입학생	
사 회 복 지 · 상 담 심 리 학 부	교양	교 양 필 수	16	19	
		교양필수선택	8	8	
		사 회 봉 사	P	P	I-IV
		미 사	P	P	I-IV
	전공기초	전공기초	15	12	
	사회복지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33	
	상담심리학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33	33	
	기타과목	교양선택, 연계전공	35	35	
계			140	140	

※ 전공기초과목은 해당 전공 및 기타과목에 포함됨.

구분	과정	과목	학점	비고
간 호 학 과	교 양	교양필수	21	
		교양필수선택	8	
		사회봉사	P	I-IV
		미 사	P	I-IV
	전 공	전공기초	21	
		전공필수	82	
		전공선택	8	
계			140	

### 제5장 수강과목 확인·변경 및 철회

제8조(확인 및 변경) ① 학생은 수강과목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과목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 변경이나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지도교수 또는 전공책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본인이 직접 전산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수강과목 철회원을 제출하여 교무입학처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할 수 있다. (2019.2.8.직제개편)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수강신청학점이 최소 15학점(졸업학기에는 제한 없음)이 되어야 한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에는 “W”(Withdraw)로 기재한다.

④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30조 제2항에 의한 학점초과신청이나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장 시험 및 성적평가

제10조(시험) 각 학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공부와 중간성적 및 학기말 시험으로 평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서 예외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실습학점은 실습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무적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성적(학점)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시험에서의 급제는 “D” 이상을 말하고, 그 미만의 평가는 낙제로 한다. 낙제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이면 타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다. 한 학기간 실제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그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록 학업성적이 급제 이상의 평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낙제로 처리한다. 다만 최종 학기 중 취업으로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학부(과)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6.12.14.단서조항삽입)

제11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다음의 원칙에 준하여 한다.(2013.4.22.수정)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0 5px;">A+</td><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 </td></tr> <tr><td style="padding: 0 5px;">A.</td><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 </td></tr> </table>	A+		A.		25%						
A+											
A.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0 5px;">B+</td><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 </td></tr> <tr><td style="padding: 0 5px;">B.</td><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 </td></tr> </table>	B+		B.		35%						
B+											
B.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0 5px;">C+</td><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 </td></tr> <tr><td style="padding: 0 5px;">C.</td><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 </td></tr> <tr><td style="padding: 0 5px;">D+</td><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 </td></tr> <tr><td style="padding: 0 5px;">D.</td><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 </td></tr> <tr><td style="padding: 0 5px;">F</td><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5px;"> </td></tr> </table>	C+		C.		D+		D.		F		40%
C+											
C.											
D+											
D.											
F											

②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제12조(시험불응) ①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중간, 학기말)중 그 한 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불응이유가 승인되면 한 차례의 시험성적의 80%를 인정받는다. (시험불응원 양식은 교무입학처에 비치) (2019.2.8.직제개정)

② 시험불응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본 대학교 지정병원)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증빙서류

③ 시험불응원은 해당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개시 일주일 전부터 해당 시험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1(공결승인) 학생이 다음 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발생 전 5일 이내에,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는 학적과로 그 사유를 신고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2008.3.1.신설)(2016.12.14.자구수정)

1.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자
2.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야외실습참가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
3. 징병검사나 병역법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
4. 학교공식 업무로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 분	기간
본인결혼	5일
부모사망	5일
조부모, 자녀, 형제사망	3일

제13조(성적제출)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6일 이내에 성적 평가표를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2.8.직제개편)

- ②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것은 “F”로 처리한다.
- ③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에 결석수란의 결석수가 강의실시 시간의 1/4이상일 때는 “출석의무”에 의거 성적이 “F”로 처리된다.
- ④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이하여백 아래 추가되는 학생들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성적확인) 제출된 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전산 처리된 결과로 담당교수는 교수 보관용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성적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학기 이수표 발송 후 15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16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재수강은 이미 이수한 과목과 교과목명, 교과번호, 학점 및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 단, 폐지된 교과목의 재수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6.12.14.단서조항삽입)

- ②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이전에 취득했던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인정하며, 인정된 학점은 성적표에 “R”(Repeated Course) 표시를 하며, 총성적 평점평균에 계산한다.(2016.12.14.자구수정)
- ③ C+ 학점 이하인 모든 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한 과목을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B+ 이하로 제한한다.(2015.01.23.자구수정)

④ 계절학기도 재수강이 가능하며, 계절학기에 수강한 학점도 일반학기에 재수강이 가능하다.

⑤ 재수강은 학기당 6학점까지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2학점까지만 가능하다. 단, 과목낙제(F)로 인한 재수강은 예외로 한다.(2016.02.03.신설)

제17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전에 입대 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2013.4.22.항목추가)

제18조(징계받은 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말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시험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험부정행위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하고 당해 교과목 모두 “W”로 처리한다.

제19조(계절제수업 성적처리) ① 계절제수업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나 환산총점 및 평점평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② 휴학자도 계절제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휴학자의 성적처리는 재학생의 성적처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휴학자가 계절제수업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후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제20조(평점평균의 계산) ① 학칙 제38조에 의한 성적 평점평균의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에 셋째 자리를 절삭한다. (그러나 수강과목을 철회한 교과목의 학점은 신청학점에서 제외함)

② 성적의 평점평균의 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평점합계 2. 성적취득 교과목수

제21조(학적부 정리) ① 제출된 성적은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우등생, 최우등생 및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장 특별시험

제22조 (특별시험) ① 1학년에 한하여 다음 과목 중 희망에 따라 공인된 영어능력 평가원에서 인증한 점수로 평가하여, 해당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까지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 어 I·II

생활영어 I·II

위의 방법으로 교양필수과목을 면제하여 여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2008.3.1.수정)

②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는 “P”로 학적부에 표시한다. (평점평균에 영향이 없음) (2008.3.1.수정)

③ 특별시험 응시희망자는 학기초 소정기간에 응시원서를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3.1.부서변경)

### 제8장 복수전공, 부전공 및 연계전공

제23조(복수전공) 복수전공은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식의 편협함을 지양하여 넓은 학문적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 하는 제도이다.

제24조(범위) 본 대학교는 복수전공(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간호학과는 예외로 한다. (2005.11.22. 단서조항추가)(2017.12.15.자구수정)

제25조(신청) 삭제

제26조(학점이수) 복수전공자는 해당전공에서 정한 전공과목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전공에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동 과목이 학부 공통과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졸업) 복수전공자는 졸업증서에 2개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28조(부전공) 부전공은 학문이 점차 상호교류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자기 전공 이외 분야에 대한 학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 전공과목을 일정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이다.

제29조(신청자격)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로서 4학년 1학기 학년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전공책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학점이수)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부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과목이 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되는 과목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계전공) 연계전공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의 동일분야에 적용되는 과목들의 수강을 통하여 해당분야 종사자로서 좀더 적합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32조(신청자격)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로서 4학년 1학기 학년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전공이수신청서를 전공책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학점이수)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각 전공에서 개설한 연계전공과목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9장 선택전공

제34조(선택전공의 결정) 선택전공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제35조(선택전공의 절차) ①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2학기말 소정 기간내 선택전공 신청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7.1. 자구수정)(2019.2.8.직제개편)

② 선택전공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및 변경,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부 내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수중인 선택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적기간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2학년 2학기말 소정기간에 전공책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선택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0장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제36조(적용대상)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교류기간) 교류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한다.

제38조(등록) 학생은 교류기간중 매학기 등록금을 본 대학교에 납입하여 재학생 신

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수강과목) 타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수강과목은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학연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0조(학점교류 신청) ① 학점교류 신청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②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전공책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한다.

③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학점교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책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무과에 제출한다.

제41조(교류학점 및 성적표기) ① 국내 교류일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교류학점을 포함하여 소속학부(전공)의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제교류학생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생략한다.

③ 교류학생의 성적처리는 타 대학 이수성적 처리시까지 성적통지를 유보한다.

④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표에 「타 대학 이수」 표기를 한다.

제42조(학점인정) ①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교과목명과 학점은 본 대학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국내교류의 학점인정은 매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타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총 교류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제교류의 학점인정은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총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어학과정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제11장 졸업의 요건

제43조(등록학기 및 총 취득학점)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지정한 소정의 학점(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08.3.1.학점수정)

제44조(분야별 취득학점)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교양과목 이수학점 및 전공과목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의 필요에 따라 졸업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미사 및 사회봉사) 미사 및 사회봉사는 각각 4개 학기 (학사편입 및 일반편입은 2학기) 이상 “P”(급)를 받아야 한다.

## 제12장 조기졸업

제46조(정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초과학점을 취득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 학부(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제47조(신청 및 졸업논문)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 초 또는 4학년 1학기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학적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2008.3.1.부서변경)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졸업논문(또는 졸업시험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

제48조(평점평균)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 제13장 졸업논문

제49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소정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① 졸업논문은 3학점 이내로 한다.

② 교육과정상 논문제출이 부적당한 학부(전공)는 졸업시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공에 따라 전공과목을 졸업논문 대체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최종 졸업학년초까지 위촉한다.

⑤ 논문지도교수는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최소 2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판정하며, P(통과) 또는 NP(부적격)으로 표시한다.

⑥ 이상과 같은 원칙의 세부계획은 학부(전공) 단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14장 계절학기수업

제50조(시기) 계절학기수업은 총장이 필요에 따라 방학중에 개설한다.

제51조(취득학점) 매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6학점의 범위 내로 한다.

제52조(성적처리) 계절학기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고, 장학생 선발 및 학사경고의 성적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제15장 재입학

제53조(재입학) ① 자진퇴학한 학생이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재적하였던 모집단위 (학부, 전공)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학사유와 재학시의 학업성적과 품행을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② 학칙 제25조 제5호, 제7호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013.4.22.항목삭제)

③ 재입학은 학기초 등록기간에 전 재적기간을 통해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한다.

### 제16장 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제54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사편입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익년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인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입학정원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편입학의 경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또는 재적했던 자로서 전적대학의 총성적평점평균이 본교 성적환산치 2.50 이상인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매학년초(또는 학기초) 해당학년의 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교포, 외교관자녀 등은 특례신입학자의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2·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전적교에서 취득한 과목 중 본교 교육과정의 교양필수 및 전공, 부전공 과목으로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은 “C” 이상이어야 한다.

⑥ 3학년에 편입학된 학생은 본교에서 7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08.3.1.수정)

⑦ <삭제> (2019.2.8. 개정)

⑧ 편입학자에게는 전학 및 전공의 변경에 관한 학칙 제19조, 조기졸업에 관한 학칙 제3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⑨ 기타 제반사항은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등록금 대체 및 반환

제55조(일반휴학) ① 의병 또는 의가사 등 상당한 이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의 휴학원서에 진단서(본 대학교 지정병원 발행)를 첨부하고, 의가사 등일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매학기 개시일 내에 교무입학처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미제출자는 제적이 된다. (2011.7.1. 자구수정)(2019.2.8. 직제개편)

② 등록을 마친 후 학기도중에 가사 등으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0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 천재지변 또는 법적 조치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기말 시험 이전까지 휴학원서에 이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③ 신입생은 의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후 첫 1학기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6조(입대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① 학기도중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대 일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입영통지서(소집통지)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중 입대하는 학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2013.4.22.항목추가)

② 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1년이 초과되면 복학 불가함)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하는 학생은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 등 관련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4.22. 항 신설)

④ 육아휴학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에 한하여 남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2013.4.22. 항 신설)(2019.2.8. 개정)

⑤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4학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3.4.22. 항 신설)

제57조(복학) ①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안에 복학원서를 작성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1.7.1. 자구수정)(2019.2.8.직제개편)

② 전역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으로 휴학하여 복학하는 학생은 진단서(본 대학교 지정병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자원퇴학)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제59조(제적)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제적된다.

①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1개월 이상 계출 없이 결석한 자

③ 소정 기한 내(휴학기간 만료자 포함)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④ 타교에 입학한 자

⑤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

⑥ 학칙 제40조에 해당되는 자

⑦ 학칙 제52조에 의하여 퇴학처분된 자

제60조(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등록을 마친 후 학기 2/3선 해당일 전에 입대휴학을 신청한 학생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대체한다. (2013.4.22. 항목추가)

② 일반휴학자의 등록금대체 및 반환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8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61조(학적부 정정) ① 학적부와 호적부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입학처에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1.7.1. 자구수정)(2019.2.8.직제개편)

② 정정사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명(호적초본 첨부)

2. 생년월일 변경(호적초본 첨부)
3. 본적 변경(호적초본 첨부)
4.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초본 첨부)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5년11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6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 학사내규 제6조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개정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7조 ② 간호학과는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학사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 가. 재입학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18조에 의한 재입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0. 1. 15.수정)

1. 학칙 제25조 제4호, 5호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2. 학칙 제52조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제3조(허가 및 절차) ① 재입학의 허가는 1회에 한한다.

②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소속 전공책임교수 및 학부장의 추천을 거쳐, 소정의 원서와 이유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앞면 증명서, 건강진단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 허가자의 1년 평점평균은 직전학기 성적과 통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등록)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재수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수강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수강 과목의 조건) ①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적으로 교과내용, 교과번호 및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과목명 및 교과내용이 동일한 경우, 학점수가 같거나 상향된 경우만 재수강

처리가 가능하다.

3. 교과내용은 동일하나 교과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개설 전공책임교수 또는 학부장의 지정 및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처리된다. 그러나 폐강된 과목이나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교과내용, 교과번호, 교과구분이 다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2019.2.8. 직제개편)

4. 재수강은 C+ 이하의 과목만 가능하다. (2015.1.23.신설)

② 폐강된 과목의 재수강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준하여 전공과목은 개설 전공책임교수, 교양과목은 교무입학처장으로부터 재수강과목을 지정을 받아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 다만, 교과과정 개편으로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은 완전 폐강된 과목과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교과내용, 교과번호, 및 교과구분이 상이한 과목은 재수강 지정 및 처리가 되지 않는다. (2019.2.8. 직제개편)

제3조(성적증명서) 동일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중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하며, 인정된 학점에 성적증명서와 학적부상에 재수강된 과목임을 나타내는 “R”(Repeted Course) 표시를 한다. 다만, 재수강하여 동일한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취득 학점에 “R” 표시를 한다.

제4조(대상학점) 모든 교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하다.

제5조(경고사항) 해당 학기에 받은 성적(재수강 처리전)에 대한 경고사항은 유효하다.

제6조(재수강 이수성적제한) 재수강하는 과목은 B+ 이하의 성적만 취득이 가능하다. (2015.1.23.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학사편입학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16조와 학사내규 제54조에 의한 학사편입학생의 학사 운영과 학점인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편입학생 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타 대학을 졸업하고 본 대학교 3학년 학사편입 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제4조(학사편입 전공범위)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방법)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면접고사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세부사항은 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한다. (2019.2.8. 개정)

제6조(이수학점) 학사편입학자는 대학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1. 해당 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해당 전공의 결정에 따라 기초과목을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3. 학사편입학생은 교양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4. 학사편입생은 7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2008.3.1.수정)

제7조(등록) 최소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6학기를 초과 등록할 수 없다

제8조(미사) 학사내규 제11장 제45조에 의하여 학사편입학자는 최소 이수학기 4학기 중 2학기 이상 미사에 출석하여 급제(P)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봉사) 학사내규 제11장 제45조에 의하여 학사편입학자는 최소 이수학기 4학기 중 2학기 이상 사회봉사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 일반편입학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15조와 학사내규 제54조에 의한 일반편입학생의 학사 운영과 학점인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편입생의 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2학년 및 3학년 일반편입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점인정 및 절차) ① 편입생의 학점인정 범위는 7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008.3.1.수정)(2017.12.15.수정)

② 학점인정 절차는 교무입학처에 비치된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인정표”에 본 대학교 교과목으로 인정받아 성적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9.2.8. 직제 개편)

③ 교양과목의 인정은 교무입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공과목(학점)의 인정은 해당 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④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 대학교의 전공이나 교양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범위 내에서 해당 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⑤ 학점인정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4분의3 이상일 경우에만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⑥ 전적대학의 성적이 “C” (본 대학교 기준) 미만인 성적은 인정할 수 없다.

⑦ 편입생 중 간호학과는 교양필수 및 필수선택 면제, 사회복지학부는 교양필수 8학점, 필수선택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학사운영) ① 편입생은 조기졸업,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

② 편입생의 전적대학에서의 부전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미사) 학사내규 제11장 제45조에 의하여 2학년 일반편입학생은 3학기, 3학년 일반편입학생은 2학기 이상 미사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봉사) 학사내규 제11장 제45조에 의하여 2학년 일반편입학생은 3학기, 3학년 일반편입학생은 2학기 이상 사회봉사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수학기) 일반편입학생 중 3학기 편입학생은 9학기, 4학기 편입생은 7학기, 5학기 편입생은 6학기를 초과등록 할 수 없다.

제8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마. 졸업논문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1조에 의한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한다.

제2조(구분) 졸업논문은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의 성격상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졸업시험이라 함은 답안지를 통하여 실력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응시자격)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7학기를 등록하고 재학중인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학생

제5조(시험) 졸업시험은 제8학기 10월 또는 4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졸업시험 실시 기준) ① 교무입학처는 시험 실시일 2개월 전에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② 출제과목은 해당 전공 교과과정에 의한 3과목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제형태는 주객관식 병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평가) ① 시험 성적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P(통과)로 하며,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NP(부적격)으로 사정한다.

단, NP(부적격) 자에게는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학적부 등재) 성적기록부에 평가의 등급 및 P(통과) 또는 NP(부적격)를 기록한다.

제9조(부정행위자의 처리)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NP(부적격)로 사정하고 P(통과)로 사정한 이후라도 이를 NP(부적격)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규정준용) 수업년한이 단축 또는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교무입학처장이 따로 정한다. (2019.2.8. 직제개편)

####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바.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8장에 따라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금의 책정) 등록금은 교육원가, 물가수준, 전학년도 등록금 등을 고려하여 학기별로 책정한다.

제3조 (등록기간) ① 등록금은 매학기 시작 전 10일 이내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60일 이내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제4조 (등록고지) 등록기간은 공식적으로 게시하고 개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분납제) ① 분납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분납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4.22.부서변경)

② 분납을 승인받은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2차 및 3차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 25조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된다. (2013.4.22.자구수정, 항목추가)

③ 1차 분납금은 학기 개시일 이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일괄납부대상자로 분류한다. (2013.4.22.내용수정)

④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생이 학기 개시일 이후 부득이하게 휴학하여야 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제7조에 정한대로 반환되고 미등록휴학으로 처리한다. (2013.4.22.항 신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2013.4.22.항 신설)

1. 신(편)입생, 재입학생
2. 휴학생
3. 등록금 고지액 중 학비감면 및 교내외 장학금 수혜 합계액이 1,000,000원 초과인 학생
4. 1차분의 분할납부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5. 이전 분할납부 학생 중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6. 학기초과학생
7.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

제6조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① 학기초과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3.1.개정)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을 납부한다.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을 납부한다.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을 납부한다.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5. 0학점 신청자(Pass/Non Pass 과목 수강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 ② 학기초과자는 수강신청과목 확정 후, 학적과에서 별도의 등록금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8.3.1.부서변경)

제7조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및 반환)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일반휴학 할 경우, 등록금 대체를 원칙으로 하며 대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3.1.자구수정)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휴학한 경우, 등록금의 5/6를 대체한다. (2013.4.22.내용수정)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2/3를 대체한다. (2013.4.22.내용수정)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1/2을 대체한다. (2013.4.22.내용수정)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경우, 등록금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2013.4.22.내용수정)

②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2/3 해당일 전에 입대휴학을 신청한 학생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제대 후 복학하는 첫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대체한다.

③ <삭제> (2008.3.1)

④ 분납이나 분납연기를 신청하고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 하거나 자원 퇴학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제1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된다. (2008.3.1. 개정)

제8조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 시간제등록생의 납입금은 입학금을 제외한 전일제 학생의 학기당 납입금 총액을 전일제 학생의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18학점)으로 나눈 금액에 신청학점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009.3.1.신설)(2009.8.1.단서조항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사. 해외장기인턴십에 관한 시행세칙(2009.8.1.신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해외장기인턴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인정 범위) 본교에서 주관하는 해외장기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기간동안 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은 실습 시수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조(절차 및 자격) ① 학점인정은 재학기간중 1회에 한하며, 해당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외장기인턴십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소속학과장(전공책임교수)과 학부장을 경유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③ 졸업학기에는 해외장기인턴십 이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학기에도 이수할 수 있다.

제4조(성적처리) ① 인턴십 학점은 해당 학생이 해당 기관에 평가서 등을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학과장(전공책임)에게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후 소속학부장을 경유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019.2.8. 직제개편)

② 해외장기인턴십의 평가는 학생의 보고서와 해당기관의 평가서를 통해 P(pass) 또는 F(fail)로 평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 방송·통신 등의 온라인 교과목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017.12.15. 신설)**

제1조(목적) ① 학칙27조 2항의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② 이 규정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방송·통신 등의 온라인 교과목(이하 온라인 교과목)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온라인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과목 수업 외, MOOC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강의를 말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가 혼합된 블렌디드 교과목도 이에 해당한다.

② 온라인 교과목 콘텐츠는 문자, 이미지,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수업용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온라인 교과목의 구성) ① 온라인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오리엔테이션,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온라인 수업의 1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연습문제 등의 수업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하며, 이 중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매차시 25분 이상을 확보하고, 강의 담당 교수가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블렌디드 교과목의 경우 오프라인 수업은 8주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③ 동일한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3년 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MOOC의 학점인증) MOOC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학생이 타대학의 MOOC를 수강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MOOC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강좌 개설 요청 신청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2019.2.8. 직제개편)
2. 신청된 MOOC 강좌의 내용 등에 대한 판단은 학부(과)·전공·교양에서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단,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과 그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은 신청 할 수 없다.
3. MOOC 수강 후 받은 인증서(Certificate)와 학점 인증 신청서를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MOOC 수강 후 받은 인증서(Certificate)는 이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수 후 1년 이내에 제출한 이수증에 한해서 인정한다.
5. 이수증의 제출은 1년에 2회[3월(전년도 9월 ~2월 이수), 9월(3월~8월 이수)]로 제한하며 기간 내에 제출한 이수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MOOC 학점의 제한은 아래와 같다.

1. 타대학 MOOC 강좌의 경우 인정되는 학점은 1학점으로 P 또는 NP로 평가하며,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2. 타대학 MOOC는 학기당 2학점 내에서 인정하며, 졸업까지 최대 6학점 내에서 인정한다. 단, 최종학기 재학생은 제외한다.
3. 타대학 MOOC는 K-MOOC로 한정한다.
4. 재학 중 이수 및 제출한 이수증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휴학 중 이수한 강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학술교류 대학교 온라인 교과목수업)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수업(계절학기 수업 포함)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모두 인정하며, 관련 절차 등은 학술교류 내용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제6조(온라인 교과목 개설) ①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신청을 받아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다.

② 온라인으로 개발할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수요, 운영계획서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 온라인 교과목 적합성, 교수역량(경험, 지식, 추진의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③ 온라인 교과목 개발은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교과목일 경우에는 교과과정을 신규 개설한 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 교과목 개발 및 개설은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온라인 교과목 개발 지원) ① 개발 승인된 온라인 교과목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온라인교과목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 신청 및 심사를 통하여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온라인 교과목 학사운영) ① 수강신청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온라인 교과목 개설은 강의 개발 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티칭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1강좌 온라인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온라인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2강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수강인원, 분반, 폐강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MOOC강좌는 예외로 적용한다.

⑥ 학점인정, 재수강, 성적평가, 강사료 지급 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온라인 교과목 저작권) ①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 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본교와 공동으로 갖는다.

②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본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수자가 이용할 경우 또는 개발한 교수가 본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와 개발 교수간 상호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강의 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 교수에게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IV. 교육과정

### 1. 교양학부

우리 대학은 선진복지국가의 필수 영역인 사회복지 및 보건 현장의 전문실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톨릭 이념과 꽃동네 정신의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지성, 인성, 영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문분야의 테두리를 넘어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지식이나 사고법, 지적인 기법의 획득,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나 삶의 태도에 관한 깊은 통찰,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힘 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우리 대학은 보편적인 교양교육의 목표와 고유한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참되고 지혜로운 인재(SOFIA) 양성’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SOFIA(σοφία)는 희랍어로 ‘지식을 넘어서선 천상의 지혜, 하느님의 충만한 지혜,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실존, 만물의 불변적인 원리에 대해 앎’을 의미한다.

꽃대의 교양교육을 통해 얻게 될 핵심역량은 윤리의식과 이타성, 문제해결능력, 공존 공감능력, 자기주도성, 세계시민의식의 5가지로써, 각 영역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SOFIA 핵심역량

S	<b>Serve your neighbors</b> 윤리의식 : 공동체 정신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봉사정신
O	<b>Optimize your mind</b> 문제해결능력 : 창의적이고 통합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능력
F	<b>Facilitate communications</b> 공존공감 : 열린 관계 맺기와 지구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소통능력
I	<b>Improve your future</b> 자기주도성 : 진로개발 및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
A	<b>Act in the world</b> 세계시민 : 세계시민으로서 전문성 실천을 위한 국제적 능력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문화 안에서 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꽃대만의 대학 인성

교육 모델을 설정하고 학년별, 단계별로 운영하며, 인성 및 영성 강화를 위한 교과-비교과적 장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책, 해답을 끌어내는 능력, 의사전달 능력,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도전하는 태도를 증진시켜 지식을 넘어 지혜를 가진 영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하고도 고귀한 가치가 생명임을 옳게 인지하고 복지와 상담, 간호 현장에서 생명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고민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지를 자각하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서 이웃과 공동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교양교육영역 및 핵심역량별 교과목 분류

교과목		교양교육영역				
구분	교과목명(학점수)	봉사	사고	소통	미래설계	글로벌
교필	말과글 (2)		○	◎	○	
	세상읽기와글쓰기 (2)		○	◎	○	
	영어/영어II (2/2)			○	○	◎
	생활영어/생활영어II (2/2)			○	○	◎
	교수와와의 만남Ⅰ~Ⅳ	○		○	◎	
	그리스도교인간학 (2)	◎	○	○		
	건학이념과대학생활 (2)	◎	○	○	○	○
	카리타스학입문(간호) (3)	◎	○	○		
	생명문화와 의료윤리(간호) (2)	◎	○	○		
	사회봉사Ⅰ~Ⅳ	◎	○	○		
미사Ⅰ~Ⅳ	◎		○			
교양선택	철학의문제들 (2)		◎	○		
	교육학개론 (2)			○	◎	
	죽음공부 (2)		◎	○		
	한국역사의이해 (2)		◎	○		
	삶과문학 (2)		◎	○		
	문학과사회 (2)		◎	○		
	용서학 (2)		○	◎		
	사람과사람관계론 (2)		○	◎		
	문화간의사소통 (2)		○	○		◎
	세계의음식과문화			○		◎
	보육학개론 (2)			○	◎	
	건강과행복심리 (2)		○		◎	

교과목		교양교육영역				
구분	교과목명(학점수)	봉사	사고	소통	미래 설계	글로벌
	현대사회와국제법 (2)		◎			○
	생활속의인권 (2) (온·오프라인 혼용수업)		◎			
	호스피스및장묘문화과정 (2)	○		◎		
	생명문화와의료윤리(사복) (2)	○	◎			
	도시와건축 (2)		◎	○		
	건강한공간디자인 (2)		◎	○		
	공감과성장 (2) (온·오프라인 혼용수업)		○	◎		
	치유의 생태학 (2) (온·오프라인 혼용수업)		◎	○		
	컴퓨터정보활용 (2)		○		◎	
	컴퓨터그래픽실무 (2)				○	
	현대사회와레크레이션 (2)			○	◎	
	나의진로설계 (2)		○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2) (온·오프라인 혼용수업)		○		◎	
	소프트볼이론과실제 (2)			◎	○	
	건강과운동 (2)			◎	○	
	영상과복지 (2)			○	◎	
	생활속의음악 (2)			◎	○	
	토익I/토익II (2/2)				○	◎
	Communication & Job Skills (2) (온·오프라인 혼용수업)				○	◎
	초급일본어 (2)				○	◎
	생활일본어 (2)				○	◎
	초급중국어 (2)				○	◎
	생활중국어 (2)				○	◎
	실무컴퓨터활용 (2)		○		◎	
	프리젠테이션스킬업 (2)			○	◎	
	<b>선택과목 중 필수이수과목 수</b>	<b>-</b>	<b>11 (필1)</b>	<b>7 (필1)</b>	<b>9 (필1)</b>	<b>8 (필1)</b>

※ 교양 선택 교과목 중 ◎ 표기된 사고영역, 소통영역, 미래설계영역, 글로벌영역 각 1과목(2학점)씩 총 4개 과목(8학점)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2.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우리대학의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는 현대 사회문제 속에서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와 상담심리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상담심리에 대한 전문성의 구비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소명의식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에서는 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 국내외 사회복지현장에 헌신적으로 기여해 온 꽃동네의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공고히 하려 한다.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에서는 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전공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부설립목적을 구현해 나가려 한다. 학생들은 우수한 교수진의 이론 교육과 다양한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 전공 간의 연계 수업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내외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우수한 사회복지와 상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학부운영상의 특징

우리대학의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는 학부운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특징 하에 운영된다.

- 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윤리의식을 갖춘 휴먼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성 및 인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② 모든 학생들이 각자 자기 전공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천전문가로서의 기본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한다.
- ③ 사회복지와 상담심리의 복수전공을 통해 실천중심의 학습을 극대화함으로써, 복지현장에서 실제 요구되는 임상적 기술의 탁월성을 담보한다.

### 3. 사회복지학전공

#### 전공안내

사회복지학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 구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구촌 시대에 공존하는 빈곤문제, 가족해체 현상, 아동문제, 노인문제, 청소년 부적응 문제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인간을 돕는 방법을 모색하는 실천학문이다. 또한 개인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속출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 사회 추구를 구체화시키려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다. 사회복지전공생들은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정책과 행정, 실천기술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맞춤형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다양한 실천기술을 함양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취득 후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 교육목표

사회복지학전공에서는 “가톨릭영성과 꽃동네정신을 바탕으로, 전공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21세기 복지국가를 리드하는 전문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인재상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리타스 정신을 갖춘 윤리적 인재를 양성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가톨릭 이념을 실천하고 꽃동네의 인간 존중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카리타스 정신과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사회복지전공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적 인재를 양성한다. 전공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신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분석, 사회문제 조사방법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다양한 국내외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습교육, 아미쿠스 복지관을 활용한 기획과 현장교류,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셋째,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인을 양성한다. 인류의 평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위와 인권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 국내외 꽃동네 현장 및 해외실습교육, NGO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시민 정신과 국제적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공 교수들은 다양한 국내외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과의 현

장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봉사, 실습교육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철학, 전문성을 겸비한 복지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졸업 후 진로

다양한 사회문제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 국민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 전공자에 대한 국가적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졸업 후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으로 일할 수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속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사로도 일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국가자격취득을 통해 보건과 학교 현장에서도 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공자에게는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 사회복지학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학 관련 자격증은 모두 국가자격증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사회복지사 1,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과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증으로 국가관리체계로 운영된다.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재학 중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지정한 전공 교과목 17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부여받게 된다. 또한 지정된 전공 교과목 17과목 이수 후,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하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은 특정 영역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1] [[시행일 2020.12.12]]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20.12.12]]

이밖에도 사회복지전공자는 각 자격증 체계에서 요구하는 관련 교과목 이수와 시험을 통해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등의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취업 분야

졸업 후 사회복지분야의 취업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공적 영역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민간 영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의 NGO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상담원 등으로 일할 수 있고, 특정 전문 영역의 자격증 취득 후, 보건과 학교 영역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이 밖에 각종 생활시설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 관련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활시설, 쉼터 등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취업 가능한 기관들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아래 표를 통해 취업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 사회복지학전공 관련 취업 분야 ]

구분	분야	취업 분야
일반 영역	공적 사회복지 영역	<b>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국가공무원]</b>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험관리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교정직 근무 등

	<p>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영역</p>	<p><b>사회복지사[국가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영역</li> <li>[지역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li> <li>[아동·청소년복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입양기관, 청소년 복지센터 등</li> <li>[노인복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복지센터, 호스피스 시설 등</li> <li>[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시설 등</li> <li>[가족·다문화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피해자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li> </ul>
<p>확장 영역</p>	<p>보건의료 영역</p>	<p><b>정신건강사회복지사[국가자격]</b></p> <p>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1년 과정의 수련 및 자격시험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자격을 취득하게 됨. 이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 재활, 사례관리, 가족교육과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대학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li> </ul> <p><b>의료사회복지사[국가자격]</b></p> <p>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중에서 소정의 수련교육 및 시험을 통해 전문사회복지사 영역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됨. 이후 병원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서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을 다양한 치료기법 및 자원연계를 통해 담당. 퇴원 후에는 사례관리 및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 역할을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호스피스 관련 시설 등에서 근무</li> </ul>
	<p>학교 영역</p>	<p><b>학교사회복지사[국가자격]</b></p> <p>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소정의 수련교육 및 시험을 통해 전문사회복지사 영역인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됨.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학생을 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학생을 둘러싼 환경을 조율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p>

[ 사회복지학전공 교과과정 ]

학년	학기	교과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기필	사회복지학개론**	3
		전기선	현대사회의 이해	3
	전기선	보건학개론	3	
	2	전 필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전 선		사회복지현장의이해	3	
전 선	가톨릭사회학	3		
2	1	전 필	사회복지조사론**	3
		전 필	지역사회복지론**	3
		전 선	청소년복지론*	3
		전 선	사회문제론*	3
		전 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3
	전 선	조직과 행정역량강화	3	
	2	전 필	사회복지실천론**	3
		전 필	사회복지법제론**	3
		전 선	아동복지론*	3
		전 선	자원봉사론*	3
전 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전 선	NGO와 복지	3		
전 선	리더십과 인적자원관리	3		
3	1	전기필	가톨릭사회복지학	3
		전 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전 필	사회복지행정론**	3
		전 선	장애인복지론*	3
		전 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전 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
		전 선	노인복지론*	3
	전 선	복지국가론	3	
	2	전 필	사회복지현장실습 I **	3
		전 필	사회복지정책론**	3
		전 선	학교사회복지론*	3
		전 선	의료사회복지론*	3
		전 선	빈곤과 복지	3
		전 선	여성과 사회	3
전 선		취·창업준비실무 I	2	
4	1	전 선	사회보장론*	3
		전 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전 선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3
		전 선	사례관리론*	3
		전 선	국제사회복지론*	3
		전 선	사회복지현장실습 II	3
		전 선	트랙기초	2
	2	전 선	취·창업준비실무 II	2
		전 선	가족복지론*	3
		전 선	사회복지발달사*	3
전 선	복지행정세미나	3		
전 선	심화실습	6		
전 선	트랙세미나	2		

\*\*는 사회복지사 1,2급 법정필수과목, \*는 법정선택과목으로 7과목 이상 선택 이수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안내 및 개설 교과목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 2019.8.12.>[시행일: 2-19.10.1.])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법정필수 10과목(30학점)과 법정선

택 7과목(21학점)을 합쳐, 총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특정 과목을 포함하여 모두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법적으로 사회복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은 물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므로 특히 수강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1, 2급 이수 기준	교 과 목 명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과목
법정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시험과목은 아니지만 필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I	시험과목은 아니지만 필수
법정선택과목 중  7과목 21학점	사회문제론	법정선택과목 중 7과목 이수 필요
	청소년복지론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역사	
	사례관리론	
	가족복지론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안내 및 개설 교과목]

건강가정사(국가자격)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 관련된 교과목 중 총 12과목(36학점)을 이수한 이에게 자격증이 주어진다. 건강가정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교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교과목	
핵심과목 (5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 치료), 여성과(현대)사회, 가족과 젠더, 비영리기관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과목 인정)	
관련 과목	기초이론 (4과목)	아동(청소년)복지론, 보육학, 노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개)론, 정신건강(정신건강사회복지)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례관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아동상담, 부부상담, 연구(조사)방법론, 집단상담 중 3과목 이상

\* 이 외에도 다른 교과목이 있으나, 본교 개설(가능)과목 중심으로 제시

## 4. 상담심리학전공

### 전공안내

심리학은 인지, 정서, 행동 등 인간의 심리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심리학 지식은 인문학에서 자연과학, 공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상담심리학은 개인이 가진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에 대해 예방 및 개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주는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본 전공의 교육과정은 상담 및 임상심리학의 이론 및 실습 과목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 발달과정을 다루는 발달심리학을 중심으로 인지, 사회, 학습심리학 등 인간행동의 기초영역을 다루는 심리학 과목들을 포함한다.

### 교육목표

상담심리학 전공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다양한 심리학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과 타인, 나아가 인간 일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연령, 분야, 계층의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심리학 전공에서는 학습, 인지, 성격, 발달 심리학 등 심리학의 기초분야를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응용분야로서는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에 역점을 두어 교육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부 졸업 수준의 전문상담 인력 양성 및 현장 실무에 최적화된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가 있다.

상담심리학 전공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공부모임을 조직하여 함께 공부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표, 즐거움을 찾아 나아가기를 적극 권장한다. 학우들이 마음을 다하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대학생활을 알차고 풍성하게 가꾸어나가기를 바란다.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즐거움과 보람으로 가득 찬 대학생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친구, 그리고 앞으로 평생 활용할 지식의 토대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상담심리학 전공교수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졸업 후 진로

최근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상담 관련 기관, 시설 그리고 다양한 복지 시설에서 학부 졸업 심리상담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 지원 기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상담센터, 기업 내 상담센터 등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문 상담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심리학 졸업생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 정신건강 관련기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Wee 클래스 등 각급 학교, 비행예방센터, 경찰, 군대, 광고회사, 심리연구소, 일반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발달심리사, 건강심리사, 범죄심리사 등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길도 열려 있다.

## 심리학 관련 자격증

상담심리학 전공자는 졸업과 함께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 상담심리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이수하면 국가자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상담심리학 졸업 예정자는 상담 및 임상심리 관련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가 있다.

또한 학회에서 발급하는 다양한 심리학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기회도 있다. 해당하는 자격증으로는 일반심리사(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사(한국중독심리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발달심리사(한국발달심리학회), 건강심리사(한국건강심리학회), 범죄심리사(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예술·놀이치료사 등이다.

## 취업 분야

졸업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상담센터, 민간시설, 병원 등에서 상담전문가 및 임상심리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전문적인 심리학 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학 전공자 특히 상담심리학 전공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와 분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담심리와 사회복지를 복수전공으로 할 경우 취업에 더욱

유리한 장점도 있다.

**<상담심리학 관련 취업 분야>**

구분	취업분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복지부)</li> <li>-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도 및 시군구)</li> <li>- 청소년쉼터, 여성보호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li> <li>- Wee센터(교육청)</li> <li>- 교도소(법무부)</li> <li>- 지역 노동청 진로상담관련 업무 및 상담관련 각종 연구기관</li> </ul>
민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시설 심리상담센터</li> <li>- 병원 정신과 및 신경과</li> </ul>
공무원(법무부, 경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및 심리조사관</li> </ul>

## &lt;상담심리학전공 교과과정&gt;

학년	학기	교과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기필	심리학개론	3
		전 선	이상심리학	3
		전 선	사회심리학	3
		전기선	현대사회의 이해	3
		전기선	보건학개론	3
1	2	전 필	성격심리학	3
		전 필	발달심리학	3
		전 선	청소년심리의 이해	3
		전기선	가톨릭사회학	3
2	1	전 필	상담심리학	3
		전 선	신경심리학	3
		전 선	학습심리학	3
		전 선	건강심리학	3
2	2	전 필	임상심리학	3
		전 선	노인심리의 이해	3
		전 선	진로상담	3
		전 선	인지심리학	3
		전 선	범죄심리학	3
3	1	전기필	가톨릭사회복지학	3
		전 선	심리평가	3
		전 선	아동청소년상담	3
		전 선	교육 및 학교심리학	3
		전 선	산업 및 조직심리학	3
3	2	전 필	심리통계	3
		전 선	아동청소년정신병리	3
		전 선	임상실무	3
		전 선	상담·임상심리 현장의 이해	3
		전 선	놀이치료	3
4	1	전 선	심리치료	3
		전 선	상담실습	3
		전 선	심리학원서강독	3
4	2	전 선	집단상담	3
		전 선	중독행동의 이해와 치료	3
		전 선	상담행정	3
전학년	1	전 선	심리세미나 I	3
		전기선	호스피스및장묘문화과정	2
	2	전 선	심리세미나 II	3
		전기선	글로벌복지	2

<심리학 관련 자격증 취득 안내 및 개설 교과목>

자격증	관련 개설 교과목	
청소년상담사 3급 (국가자격)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심리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청소년심리의 이해	
임상심리사 2급 (국가자격)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치료	
직업상담사 2급 (국가자격)	진로상담	
상담심리지도사 1급 (민간자격) ※ 필수 1과목, 필수선택 2과목, 일반선택 4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필수 1개 과목 이수	상담이론, 아동청소년상담,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필수선택 2개 과목 이수	심리검사, 가족상담,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일반선택 4개 과목 이수	발달심리학, 아동청소년심리학, 노인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임상심리학, 진로상담, 이상심리학
일반심리사 (민간자격)	기초심리 과목	신경심리학,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통계
	응용심리 과목	임상심리학(이상심리, 심리검사), 상담심리학(심리치료)
발달심리사 2급 (민간자격)	아동청소년심리, 심리검사, 노인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신경심리학	

## 5. 간호학과

### 전공안내

간호학은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실천하는 학문이다. 인간과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최적의 안녕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을 돌보는 것이다.

간호(nursing)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다.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간호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박애와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체계 내에서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질병예방, 건강회복,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본 대학의 간호학과는 가톨릭의 이념인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고 꽃동네의 인간존중 정신을 실현하며 인류복지 구현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교육목적

간호학과는 교육목적은 가톨릭의 박애정신과 꽃동네의 인간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직 윤리와 규범을 준수하며, 창의력·지도력·협동력·비판적사고·공감능력을 갖추고, 간호과학적 이론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 전문직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 교육목표

1.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법적 기준과 표준을 이해하여 실무에 통합한다.
2. 대상자의 간호상황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3.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대상자의 간호요구에 대처한다.
4.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하여 비판적 사고와 임상적 추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실무에 적용한다.

5.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태도와 자질을 함양한다.
6. 간호리더십 원리에 근거한 지도력을 강화하여 간호 팀 내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7. 간호연구를 기획, 수행하여 학문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보건 의료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학습성과

- PO1: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하여 실무에 통합한다.
- PO2: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한다.
- PO3: 대상자의 간호상황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 PO4: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 PO5: 간호실무에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 PO6: 비판적 사고와 임상적 추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 PO7: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를 설명한다.
- PO8: 간호리더십 원리를 이해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
- PO9: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직접 수행한다.
- PO10: 국내외 보건 의료 정책변화를 인지한다.

### 학과연혁

- 2006년 3월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 2006년 3월 간호학과 초대학과장으로 강성례교수가 부임하였다.
- 2007년 3월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실습실을 개관하였다.
- 2008년 3월 간호학과 2대 학과장으로 강성례교수가 부임하였다.
- 2008년 4월 첫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 2008년 3월부터 청주, 대전, 서울, 수도권외의 10여개 임상기관 및 3개의 공공기관, 3개의 복지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

- 2009년 3월부터 간호학과 신입생 전원에게 꽃대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2010년 2월 간호학과 첫 졸업생 33명을 배출하였으며, 이후 6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을 달성하였다.
- 2010년 9월 간호학과 3대 학과장으로 이소영교수가 부임하였다.
- 2011년 8월 간호학과 기본간호학 실습실을 도서관 지하에서 강의동 5층으로 이전하였으며, 모성아동간호학실습실, 종합간호실습실을 개원하였다.
- 2011년 11월 일본 니이카타세이료대학(新潟靑陵大學)과 학술교류협정 체결하여 양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술교류를 수행하였다.
- 2012년 9월 간호학과 4대 학과장으로 전해원교수가 부임하였다
- 2013년 1월 본교와 일본 니이카타세이료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필리핀 꽃동네 (사회복지시설)에서 2주간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 2013년 6월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 2주기 간호교육인증을 획득하였다.
- 2014년 9월 간호학과 5대 학과장으로 전해원교수가 부임하였다.
- 2015년 2월 간호사 국가고시 6년 연속 100% 합격하였다.
- 2016년 3월 간호학과 개설 10주년 기념행사를 하였다.
- 2016년 3월 간호학과 모성 아동 시뮬레이션 실습실 구축을 완성하였다.
- 2016년 8월 간호학과 6대 학과장으로 김선애교수가 부임하였다.
- 2017년 2월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하였다.
- 2017년 7월 키르기스스탄 국제보건리더십 프로그램(GLP)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 2017년 12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주기 간호교육인증을 획득하였다.
- 2018년 2월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하였다.
- 2018년 3월 간호학과 7대 학과장으로 전해원 교수가 부임하였다.
- 2018년 7월 키르기스스탄 국제보건리더십 프로그램(GLP)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 2019년 2월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하였다.
- 2019년 9월 미국 콜럼비아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다.
- 2020년 신입생부터 53명으로 간호학과 정원을 증원하였다.

- 2020년 2월 간호학과 4학년 38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아 미국으로 전공 밀착형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졸업 후 진로**

최근 사회변화와 함께 보건의료환경도 바뀌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의 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으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간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생활실천을 이끌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및 간호가 필수적이므로 간호학과 졸업 후 의료기관 취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센터, 산업체, 교육기관, 정부보건기관 등으로 간호사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간호교육가, 간호연구가, 간호행정가로 활약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전문간호사과정은 국가자격으로서 현재 13종의 전문간호사 자격취득 기회가 열려있다. 그 외 간호학과 세부 전공의 특성에 따라 조산사, 보건진료원, 보건직공무원, 보험간호사, 항공간호사, 모유수유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간호학은 국제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하여 졸업 후 다양한 국가의 간호사면허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면허취득 국가에서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 &lt;간호학과 교과과정&gt;

학년	학기	교과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	1	전 기	인체해부학	2	2
		전 기	인체생리학	2	2
		전 필	간호학개론	2	2
1	2	전 기	병원미생물학	2	2
		전 기	인체병리학	2	2
		전 필	기본간호학 I	1	1
		전 기	인간발달론	3	3
2	1	전 필	기본간호학 II/기본간호학실습 I	2/1	2/2
		전 필	건강사정/건강사정실습	2/1	2/2
		전 필	간호용어	1	1
		전 선	보건영양학	2	2
		전 선	운동과재활	2	2
		전기선	인간심리의이해	2	2
		전기선	문화와돌봄	2	2
2	2	전 기	임상약리학	2	2
		전 기	인간관계와의사소통	2	2
		전 필	기본간호학 III/기본간호학실습 II	2/2	2/4
		전 필	성인간호학 I	2	2
		전 필	통합이론 I	2	2
		전 선	보건교육방법론	2	2
		전 선	비판적사고와간호과정	2	2
		전기선	직업과윤리	2	2
		전기선	공감의리더쉽	2	2

학년	학기	교과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3	1	전 필	성인간호학실습 I	2	6
		전 필	아동간호학 I	3	3
		전 필	아동간호학실습	2	6
		전 필	정신간호학 I	3	3
		전 필	정신간호학실습	2	6
		전 필	여성건강간호학 I	2	2
		전 필	성인간호학 II	2	2
		전 필	기초임상실습	2	6
3	2	전 필	성인간호학실습 II	2	6
		전 필	성인간호학 III	2	2
		전 필	아동간호학 II	2	2
		전 필	핵심술기실습 I	2	6
		전 필	정신간호학 II	2	2
		전 필	핵심술기실습 II	2	6
		전 필	지역사회간호학 I	2	2
		전 필	간호관리학 I	3	3
		전 선	응급간호	2	2
		전 선	중환자간호	2	2
4	1	전 필	성인간호학실습 III	2	6
		전 필	성인간호학 IV	2	2
		전 필	핵심술기실습 III	2	6
		전 필	지역사회간호학 II	3	3
		전 필	여성건강간호학 II	3	3
		전 필	통합실습	2	6
		전 필	간호관리학 II	2	2
		전 필	간호관리학실습	2	6
		전 필	통합이론 II	1	1
4	2	전 필	영적간호	2	2
		전 필	지역사회간호학실습	2	6
		전 필	간호연구	2	2
		전 필	여성건강간호학실습	2	6
		전 필	보건의료법규	2	2
		전 필	성인간호학 V	2	2
		전 선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2	2
		전 선	보완대체중재	2	2

## V. 대학생활

### 1. 장학안내

#### ■ 신입생 장학금

명칭		수혜대상	수혜액 및 특전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수시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간호학과 수석 (단, 직전학기 평점 평균 3.5이상인 자)	4년간(8학기) 매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포함)
복지장학금	한울장학금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심사	수업료의 50%
	나눔장학금	해당관청에 등록된 소년소녀 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생활자(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인자)	4년간(8학기) 수업료 전액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재학생은 직전학기 3.5이상 전액 2.5~3.5미만은 수업료의 50%)
가족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우리대학 재학 중인 형제, 자매가 있는 신입학생	수업료의 50%(입학금 제외)
통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등록금의 50%(차액은 통일부 지원)
정진석장학금		소속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4년간(8학기) 매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포함)
이사장장학금		꽃동네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4년간(8학기) 매학기 수업료 전액 (입학금 포함)
꽃대장학금		신입생 전원	100만원

■ 재학생 장학금

명칭		수혜대상 및 조건	수혜액 및 특전
성적 장학금	성적A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등록 인원의 2.5%에 해당하는 인원	수업료 전액 (해당 학기)
	성적B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등록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	수업료의 50% (해당 학기)
	성적C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등록 인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100만원 (해당 학기)
봉사장학금	학생회장		수업료 전액
	부회장		수업료의 50%
	집행부		70만원
	동아리 연합회장		100만원
	동아리연합 부회장		70만원
	학교발전에 기여한자(국제대회입상)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50%
	모범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한 자(꽃동네 제외) 봉사 200시간 이상		수업료의 50%
해외봉사 -교내외 공인된 해외봉사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		일정금액	
근로장학금	교내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자	일정금액	
통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직전학기 1.75이상)	수업료의 50%	
꽃동네 장학금	믿음 소망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믿음 : 직전학기 25일(200시간)이상 봉사 -꽃동네 봉사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li> <li>• 소망 : 직전학기 45일(360시간)이상 봉사 -꽃동네 봉사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li> <li>• 사랑 : 직전학기 15일(120시간)이상 봉사 -대학설립이념 및 꽃동네영성에 맞고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120시간 이상) -졸업 직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꽃동네 근무(최소 1년 이상), 4개 학기이상 이수한 자</li> <li>•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믿음 : 한 학기 수업료의 50%</li> <li>• 소망 : 두 학기 수업료의 50%</li> <li>• 사랑 : 해당기간 수업료 전액</li> </ul>
	최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설립이념 및 꽃동네 영성에 맞고 봉사실적 우수한 자</li> <li>-본교의 아나뎀 프로그램(빈민 구제)참여 의무, 수도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li> <li>-사회봉사 수강하는1,2학년의 경우, 봉사시간에 해당하는 30시간은 장학생 지급조건에서 제외</li> <li>-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li> </ul>	한 학기 60만원(2,3,4학년)

### ■ 재학생 장학금

명칭		수혜대상 및 조건	수혜액 및 특전
복지장학금	한울장학금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직전학기 2.0이상)	수업료의 50%
	키움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기존 나눔장학금)</li> <li>• 차상위계층 자녀(기존 돌봄장학금)</li> <li>• 최저생계비 120% 미만</li> <li>-직전학기 2.5이상</li> </ul>	수업료의 50%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8학기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의 직계자녀(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8학기 등록금의 50%

#### ○ 재학생 성적장학금 동점자 처리

- 1순위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
- 2순위 : 직전학기 전공필수 취득학점이 높은 자.
- 3순위 : 직전학기 전공필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2. 도서관 이용안내

### (1) 개관시간

구분	학기중	토요일	방학기간
종합자료실	09:00~21:00	개방안함	09:00~17:00
전자정보실	09:00~21:00	개방안함	09:00~17:00
일반열람실	06:00~23:00		

### (2) 열람실 안내

전자정보실(1층)	전자정보실은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 인터넷 정보검색, 국회도서관 원문 검색과 같이 다양한 학술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음향 및 영상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종합자료실(2,3층) 270-0632	종합자료실은 사회과학자료(3층), 자연·기술과학자료(3층), 인문과학자료(2층), 참고자료(2층), 권장도서(3층), 연속간행물(3층), 학위논문(3층) 등의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출 및 복사가 가능하다.
일반열람실(1층)	이용자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개인학습공간이다.

### (3) 휴관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기타 도서관장이 정한 임시휴관일

### (4) 대출반납

#### 1) 대출책수

대출책수	대출기간
5 책	10 일

#### 2) 대출

가. 도서 대출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한다.

나. 도서를 대출하고자 할 때는 검색시스템이나 한국십진분류표(KDC)를 참조하여 찾고자 하는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자 자신이 서가에서

직접 찾은 후 학생증과 함께 대출대에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 당일 반납한 도서는 당일 재대출이 불가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이전에 1회(반납연기일로부터 7일)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3) 예약

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이미 대출되었을 경우에는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된 도서는 반납 후 타인에게 대출되지 않고 예약자에게만 대출된다.

나. 예약가능권수는 2권이며, 예약도서가 반납된 후 3일 이내에 대출하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 4) 반납

대출한 도서는 반드시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해야 하며, 반납 시 반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5) 연체

연체기간 중에는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반납하는 자료 중 연체일이 가장 큰 자료의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나. 누적연체책수 6책 이상 또는 누적연체일 30일 초과 시 잔여학기 포함 두학기 대출정지

다. 휴학 및 자퇴서 날인거부

라. 연체일 30일 초과 시 제증명발급중지, 학과통보, 명단공개

### 6) 분실 및 훼손도서

가. 처리절차

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면 동일도서 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실자료 변상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시가의 2배로 변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서는 대개 한정부수로 출판되므로 시일이 지나면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시가의 2배 변상은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니 대출도서는 절대 분실,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가의 2배 변상은 장서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일 따름이며 그 도서를 필요로 하는 타 이용자에게

주는 피해는 아무리 많은 변상금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

나. 분실도서처리 변상기준

동일도서변상이 원칙으로, 실물변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변상한다.

가격이 확실한 경우	(구입가격×2)+ 발행연도부터 매년 10% 추가 + 2,000원(정리비)	
가격이 미상인 경우	페이지 수×80원+2,000원(정리비)	
학위논문	50p.이하	5,000원
	50p.초과	면당 50원 추가
특정자료	전문가의 감정액	

(5) 관내이용

다음과 같은 자료는 관외대출이 되지 않으며 관내이용 및 복사만 허락된다.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각종 신문	지정도서	특수자료
기타 관외대출시 훼손의 우려가 높은 도서		

(6) 유의사항

가. 학생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 부정대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학생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빌려준 학생증은 발견 시 압수한다. 학생증이 도서대출증을 겸하고 있으므로 분실하면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부정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나.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자료를 훼손하는 이용자는 일정기간 대출이 중지되며, 학과통보, 징계 등 엄중 처벌을 받는다.

다. 도서관내로의 취식물(커피, 음료수 포함) 반입은 불가하다.

라. 다른 이용자를 위해 자료실 내에서는 고성이나 신발소리 등을 주의하여 먼학분위기를 유지하며 휴대전화는 매너모드로 전환한다.

마.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하고, 애완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도서관에 출입할 수 없다.

## 3. 학교버스 안내(학기 중 운행)

A차량(오전)	
경유지	시간
경덕중	07:55
고속터미널(버스정류장)	07:58
죽천교	08:02
청주고 정문 맞은편(피자헛)	08:06
충북대학교 중문 (시외버스 승강장)	08:09
충북대학교 병원	08:12
서남교회 앞	08:14
가경동 홈플러스 (시내버스 정류장)	08:16
남청주IC 3번 승강장	08:25

B차량(오전)	
경유지	시간
금천동 정관장 앞	07:50
금천사우나 앞	07:53
LG프라자(전자)	07:56
용암성당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장	07:58
용암도 현대3차아파트 시내버스 정류장	08:01
E마트	08:12

#### 4. 찾아오시는길



##### 기차 이용 시

신탄진역에 하차하여 일반버스정류장(도보로 약 3분거리)으로 이동하여 청주행버스 (407번) 승차 ⇒ 외천2리 정류장 하차 ⇒ 꽃동네대학교 방면 버스(412번) 환승 ⇒ 꽃동네대학교 정류장 하차

#####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청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 상당공원 방면 버스 승차 → 상당공원 정류장 하차 → 꽃동네대학교 방면 버스(412번) 환승 → 꽃동네대학교 정류장 하차

##### 자가용차량 이용 시

[고속도로 이용] 남청주I.C.(구 청원I.C.) → 세종시 방면 → 1.3km가량 직진하여 좌회전 → 1.5Km가량 직진하여 우회전.

[국도 이용] 17번 국도 이용하여 남청주I.C.(구 청원I.C.) 도착 → 이하 위와 같음.

##### 세종방면에서 시내버스 이용 시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꽃동네대학교 방면 버스(430번) 승차 →꽃동네대학교 하차

## 5. 캠퍼스 안내

### 1) 지혜관

- 1층 : 학생지원처장실, 학생지원처, 아미쿠스생각디자인, 학생휴게실
- 2층 : 행정본관 사무실(기획관리처장실, 기획관리처, 교무입학처, 교무입학처장실)
- 3층~4층 : 교목처장실, 교목실, 교수연구실
- 5층 : 게스트룸

### 2) 진리관

- 1층 :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상담실, 상담실습실, 법인사무실
- 2층 : 기도실, 어울림방, 강사휴게실, 재무과, 강의실
- 3층 : 총장실, 대학원장실, 회의실, 강의실
- 4층 : 학부, 학과사무실, 가톨릭국제교육원, 대학원사무실 및 원우회실, 강의실
- 5층 : 실습연구원실, 강의실, 실습실

### 3) 도서관

- 지하1층 : 동아리연합회실, 각동아리실, 복지영상실
- 1층 : 열람실, 전자학습실습실, 전자정보열람실, PBL룸, 카페하나
- 2층 : 종합자료실, 대출실, 컨벤션홀(2층)
- 3층 : 종합자료실(2층으로 출입), 컨벤션홀(3층), 사서과, 전산기계실, 남자학생휴게실
- 4층 : 총학생회실, 아미쿠스, 간호자치실, 여자학생휴게실

### 4) 마리아의집 : 제1기숙사(여학생)

### 5) 은총관 : 대강당

### 6) 요셉의집 : 제2기숙사(남학생)

## 6. 교내 주요 전화번호(국번 043-270-0\*\*\*)

구분	전화번호
교목실	176
수업, 학적 문의(학적과)	104
장학 문의(학생과)	103
강의실, 시설 신청(사회복지학부)	183
홈페이지 등 전산 문의(전산과)	638
도서대출, 열람문의(도서관)	632
대학원	131
현장실습, 자격증문의(사회복지)	183
사회봉사센터	180
간호학과 사무실	611
간호학과 실습실	612
학보사	150
학생생활상담연구소	648
여학생 사감실	411
남학생 사감실	500
기숙사 1층 휴게실	414
기숙사 2층 휴게실	423
기숙사 3층 휴게실	433
기숙사 4층 휴게실	451
식당	404
총학생회	181
동아리연합회	179